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31 호

2018년2월13일(화)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구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8-4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8-47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7
- 여수시 고시 제2018-4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변경) 인가 고시 /1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394호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9
- 여수시 공고 제2018-399호 전문건설업 폐업공고 /25
- 여수시 공고 제2018-406호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18-408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46
- 여수시 공고 제2018-410호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 /55
- 여수시 공고 제2018-413호 도로지정 공고(관문동 127번지 외 1필지) /65

회 판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 12. .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화장동 145-2, 선원동 630-2 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나. 명 칭 : 녹지공원(선원뜨레 방풍림 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 (당초) 49,145.2㎡, (변경) 48,26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초)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허수영/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변경)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김교현/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여천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이규정/여수시 여수산단3로 2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 (당초)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재율/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 (변경)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상우/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창범/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 KPX라이프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양준영, 최수동/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7. 7.27.
  - 나. 준공예정년월일 : (당초) 2017.12.31., (변경) 2018. 3.31.
6.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참조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9. 관계도서(변경): 게재 생략(여수시 도시계획과)

10. 인가조건(변경): 게재 생략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화장동	145-2	철	3,592.0	2.0		국토교통부	
2	화장동	산51-3	철	1,041.0	749.0		국토교통부	
3	화장동	134-2	철	1,700.0	1,700.0		여수시	
4	화장동	134-1	철	710.0	710.0		국토교통부	
5	화장동	671-4	구	79.0	79.0		국토교통부	
6	화장동	1194-3	구	102.0	102.0		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선원동	1194-3	구	102.0	102.0		국토교통부	
7	선원동	623-3	철	34.0	34.0		여수시	
8	선원동	623-2	철	1,506.0	1,506.0		국토교통부	
9	선원동	1183-8	도	73.0	73.0		국토교통부	
10	화장동	799	도	8,884.5	39.3		여수시	당초 변경
	화장동	799	도	-	-		여수시	
11	선원동	630-2	철	3,130.0	3,109.1		국토교통부	
12	선원동	806	임	249.4	249.4		여수시	당초 변경
	화장동	806	임	249.4	249.4		여수시	
13	선원동	1183-62	도	508.0	51.0		국토교통부	
14	선원동	692-3	철	17.0	17.0		국토교통부	
15	선원동	693-2	도	3.0	3.0		국토교통부	
16	선원동	768-2	철	9,723.0	9,723.0		국토교통부	
17	선원동	1287-1	대	792.8	792.8		여수시	당초 변경
	선원동	1287-1	대	-	-		여수시	
18	선원동	1288	도	10,488.1	45.3		여수시	당초 변경
	선원동	1288	도	-	-		여수시	
19	선원동	1287	임	1,529.5	1,529.5		여수시	
20	선원동	산150-2	철	99.0	99.0		국토교통부	
21	선원동	771-3	철	1,048.0	1,048.0		국토교통부	
22	선원동	1313	임	5,102.9	3,842.0		여수시	
23	선원동	1183-74	도	678.0	320.0		국토교통부	
24	선원동	829-2	철	3,453.0	3,453.0		국토교통부	
25	선원동	829-3	철	3.0	3.0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6	선원동	830-3	철	10.0	10.0		여수시	
27	선원동	800-1	철	583.0	583.0		국토교통부	
28	선원동	1183-67	도	1,162.0	678.8		국토교통부	
29	선원동	847-2	철	10.0	10.0		국토교통부	
30	선원동	847-1	철	36.0	36.0		국토교통부	
31	선원동	849-2	철	5,017.0	5,017.0		국토교통부	
32	선원동	1187	구	1,232.0	91.0		국토교통부	
33	선원동	895-5	도	139.0	33.0		여수시	
34	선원동	895-2	답	23.0	5.0		여수시	
35	선원동	899-2	철	3,957.0	3,957.0		국토교통부	
36	선원동	1187-5	구	264.0	66.0		국토교통부	
37	선원동	185-1	철	1,404.0	1,404.0		국토교통부	
38	선원동	1183-59	도	25.0	25.0		국토교통부	
39	선원동	194-2	철	1,091.0	1,091.0		국토교통부	
40	선원동	1183-6	도	1,305	62		국토교통부	
41	선원동	286-2	철	952	519		여수시	
42	선원동	229-2	임	2200	2151		여수시	
43	선원동	산95-3	철	198	7		여수시	
44	선원동	230	잡	953.8	953.8		여수시	
45	선원동	202-2	철	589	82		여수시	
46	선원동	1185-3	구	126	12		국토교통부	
47	선원동	206-2	철	2,283	299		여수시	
48	선원동	206-29	철	195	87		여수시	
49	선원동	1183-58	도	44	6		여수시	
50	선원동	215-2	철	4,685	1,249		여수시	
51	선원동	89-1	철	1,224	1,192		여수시	당초 변경
	선원동	89-1	철	1,224	1,192		국토교통부	
52	선원동	44	도	4,135	239		국토교통부	
계				88,389.0	49,145.2			당초 변경
				68,223.6	48,267.6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둔덕동 56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나. 명 칭: 녹지공원(원학동 방풍림 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당초) 95,772㎡, (변경) 95,8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초)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허수영/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변경)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김교현/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여천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이규정/여수시 여수산단3로 2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 (당초)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재율/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변경)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상우/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창범/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 KPX라이프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양준영, 최수동/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7. 7.27.
  - 나. 준공예정년월일 : (당초) 2017.12.31., (변경) 2018. 3.31.

6.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원학동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 고
원학동공원	근린공원	둔덕동 568-2 일원	97,930.0	여고 제2012-222호(2015.4.22)	

나. 원학동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공원명	위 치	공원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비 고
원학동공원	둔덕동 568-2 일원	97,930.0	21,175.3	-	당초
		97,930.0	21,189.2	-	변경

다. 원학동공원 시설조서

구분	시설면적(m <sup>2</sup> )	비 고
시설면적	21,175.3	21.6%
	21,189.2	

라. 원학동공원 시설결정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	97,930.0				
시 설 면 적	소계	21,175.3 21,189.2			시설율 21.6%	
	도로	도로	19,202.6 19,216.0		당초 변경	
	조경시설	초화원, 캐년로드A~E	493.4			
	휴양시설	파고라, 평의자, 등 의자	-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	725.1			
	편의 및 관리시설	주차장A~B, 보행데크A~B	754.2 754.4			당초 변경
	녹지 및 기타	녹지	76,754.7 76,741.1			녹지율 78.4%(당초) 녹지율 78.3%(변경)
기타시설(교량A~B)		-				

마. 원학동공원 시설물조사

구분	번호	시설내용	시설위치	부지면적 (㎡)	규모 (개소)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	-	97,930.0				
시설합계		-	-	21,175.3 21,189.2				21.6%
도로	-	도로		19,202.6 19,216.0				당초 변경
	소계			19,202.6 19,216.0				당초 변경
조경 시설	1-1	초화원		493.4				
	1-2	캐년로드A		-	1			
	1-3	캐년로드B		-	1			
	1-4	캐년로드C		-	1			
	1-5	캐년로드D		-	1			
	1-6	캐년로드E		-	1			
	소계			493.4				
휴양 시설	2-1	파고라		-	5			
	2-2	평의자		-	15			
	2-3	등의자		-	20			
	소계			-				
운동 시설	3-1	게이트볼장		553.1				
	3-2	체력단련장		172.0				
	3-3	체력단련시설A		-	1			
	3-4	체력단련시설B		-	1			
	3-5	체력단련시설C		-	1			
	3-6	체력단련시설D		-	1			
	3-7	체력단련시설E		-	1			
	소계			725.1				
편의 및 관리 시설	4-1	주차장A		302.9				
	4-2	주차장B		303.0				
	4-3	보행데크A		57.5				당초 변경
				57.7				
	4-4	보행데크B		90.8				
	소계			754.2 754.4				당초 변경
녹지 및 기타	5-1	녹지		76,754.7 76,741.1				78.4%(당초) 78.3%(변경)
	5-2	교량A(기타시설)		-	1			
	5-3	교량B(기타시설)		-	1			
소계			76,754.7 76,741.1				당초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참조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9. 관계도서(변경) : 게재 생략(여수시 도시계획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1	둔덕동	565-6	철	776	73	-	국(국토교통부)	
2	둔덕동	568-2	철	3,368	2,927	-	국(국토교통부)	
3	둔덕동	579-9	철	56	56	-	국(국토교통부)	
4	둔덕동	589-2	철	2,087	2,068	-	국(국토교통부)	
5	둔덕동	591-3	철	255	144	-	국(국토교통부)	
6	둔덕동	596-2	철	232	93	-	국(국토교통부)	
7	둔덕동	610-2	철	383	319	-	국(국토교통부)	
8	둔덕동	612-1	철	1,478	1,288	-	국(국토교통부)	
9	둔덕동	617-21	구	641	123	-	국(국토교통부)	
10	둔덕동	628	도	205	146	-	국(국토교통부)	
11	둔덕동	645-1	철	59	46	-	국(국토교통부)	
12	둔덕동	645-2	도	33	8	-	국(국토교통부)	
13	둔덕동	645-3	철	138	125	-	국(국토교통부)	
14	둔덕동	산144-5	철	99	22	-	국(국토교통부)	
15	둔덕동	산152-2	철	99	41	-	국(국토교통부)	
16	둔덕동	산153-2	철	694	680	-	국(국토교통부)	
17	둔덕동	산154-1	철	412	356	-	국(국토교통부)	
18	둔덕동	산154-4	도	628	545	-	국(국토교통부)	
19	둔덕동	산155-2	철	201	200	-	국(국토교통부)	
20	둔덕동	산155-14	도	1,039	32	-	국(국토교통부)	
21	둔덕동	산155-29	도	335	335	-	국(국토교통부)	
22	둔덕동	산155-36	도	97	42	-	여수시	
23	둔덕동	산156-2	철	1,712	1,709	-	국(국토교통부)	
24	둔덕동	산156-4	철	198	198	-	국(국토교통부)	
25	둔덕동	산157-3	철	198	198	-	국(국토교통부)	
26	선원동	44	도	4,135	10	-	국(국토교통부)	
27	선원동	45	도	18,787	2,348	-	국(국토교통부)	
28	선원동	48	임	7,715	155	-	여수시	
29	선원동	49	도	4,534	665	-	여수시	당초
	선원동	49	도	4,534	709	-	여수시	변경
30	선원동	81-1	철	49	44	-	국(국토교통부)	당초
	선원동	81-1	철	49	49	-	국(국토교통부)	변경
31	선원동	89-1	철	1,224	22	-	국(국토교통부)	
32	선원동	97-1	철	1,165	1,144	-	국(국토교통부)	
33	선원동	98-1	철	13	3	-	국(국토교통부)	
34	선원동	215-2	철	4,685	190	-	국(국토교통부)	
35	선원동	1181-2	구	219	175	-	국(국토교통부)	
36	학동	138	도	35,125	110	-	국(국토교통부)	
37	학동	140	임	7,471	171	-	여수시	
38	학용동	6-2	철	152	152	-	국(국토교통부)	
39	학용동	19-2	철	195	191	-	국(국토교통부)	
40	학용동	20-1	철	761	756	-	국(국토교통부)	
41	학용동	21-2	철	615	615	-	국(국토교통부)	
42	학용동	23-1	철	327	327	-	국(국토교통부)	
43	학용동	23-2	철	43	43	-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44	학용동	45-2	철	1,133	1,133	-	국(국토교통부)	
45	학용동	48-2	철	843	843	-	국(국토교통부)	
46	학용동	50-1	철	165	165	-	국(국토교통부)	
47	학용동	101-1	철	1,975	1,975	-	국(국토교통부)	
48	학용동	129-1	철	650	650	-	국(국토교통부)	
49	학용동	132-2	철	1,154	1,154	-	국(국토교통부)	
50	학용동	174-1	철	33	33	-	국(국토교통부)	
51	학용동	232-3	공	202	195	-	여수시	
52	학용동	233-3	임	460	450	-	여수시	
53	학용동	234-1	철	3,001	2,968	-	국(국토교통부)	
54	학용동	234-2	전	151	151	-	여수시	
55	학용동	238	전	53	53	-	여수시	
56	학용동	239	전	263	97	-	여수시	
57	학용동	240	공	622	604	-	여수시	
58	학용동	283	전	473	437	-	여수시	
59	학용동	284	전	529	499	-	여수시	
60	학용동	287-2	공	234	25	-	여수시	
61	학용동	288-1	철	1,804	1,725	-	국(국토교통부)	
62	학용동	288-2	공	1,330	468	-	여수시	
63	학용동	289	묘	494	66	-	여수시	
64	학용동	290-3	묘	159	159	-	여수시	
65	학용동	291-3	전	268	259	-	여수시	
66	학용동	295-3	전	567	498	-	여수시	
67	학용동	296-1	전	86	86	-	황덕지	
68	학용동	313-3	묘	7	7	-	김두환	
69	학용동	313-4	묘	20	20	-	김두환	
70	학용동	314-5	전	817	817	-	여수시	
71	학용동	314-6	대	152	150	-	여수시	
72	학용동	314-7	전	45	45	-	여수시	
73	학용동	315-2	철	5,146	5,133	-	국(국토교통부)	
74	학용동	375-2	철	5,360	5,346	-	국(국토교통부)	
75	학용동	640-2	전	178	100	-	여수시	
76	학용동	641-3	전	99	86	-	여수시	
77	학용동	641-4	철	7	4	-	국(국토교통부)	
78	학용동	641-5	철	799	760	-	국(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학용동	641-5	철	799	799	-	국(국토교통부)	
79	학용동	642-2	철	1,892	1,892	-	국(국토교통부)	
80	학용동	642-4	철	60	60	-	국(국토교통부)	
81	학용동	642-5	철	17	17	-	국(국토교통부)	
82	학용동	642-6	철	23	23	-	국(국토교통부)	
83	학용동	642-7	전	270	218	-	여수시	
84	학용동	643-3	철	20	20	-	국(국토교통부)	
85	학용동	649-3	전	60	60	-	여수시	
86	학용동	650-3	철	30	30	-	국(국토교통부)	
87	학용동	650-4	철	17	17	-	국(국토교통부)	
88	학용동	650-5	전	334	325	-	여수시	
89	학용동	651	전	90	9	-	여수시	
90	학용동	652-2	전	631	481	-	여수시	
91	학용동	652-3	임	76	23	-	여수시	
92	학용동	670-2	전	147	147	-	여수시	
93	학용동	671-3	전	16	16	-	여수시	
94	학용동	682-2	철	8,528	7,566	-	국(국토교통부)	
95	학용동	766-2	철	1,818	1,706	-	국(국토교통부)	
96	학용동	920-1	도	11	11	-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적	주소	성 명	비고
97	학용동	924	구	1,324	207	-	국(국토교통부)	
98	학용동	924-9	구	527	251	-	국(국토교통부)	
99	학용동	924-10	구	539	178	-	국(국토교통부)	
100	학용동	924-11	구	240	160	-	국(국토교통부)	
101	학용동	930-32	도	423	107	-	국(국토교통부)	
102	학용동	930-35	도	95	63	-	국(국토교통부)	
103	학용동	930-68	도	250	250	-	국(국토교통부)	
104	학용동	930-70	도	122	122	-	국(국토교통부)	
105	학용동	930-71	도	194	194	-	국(국토교통부)	
106	학용동	930-72	도	30	20	-	국(국토교통부)	
107	학용동	933	구	882	849	-	국(국토교통부)	
108	학용동	산35-2	철	1,289	1,289	-	국(국토교통부)	
109	학용동	산50-2	철	1,388	1,388	-	국(국토교통부)	
110	학용동	산51-2	철	298	298	-	국(국토교통부)	
111	학용동	산52-2	철	2,876	2,876	-	국(국토교통부)	
112	학용동	산54-1	철	298	298	-	국(국토교통부)	
113	학용동	산57-2	철	992	992	-	국(국토교통부)	
114	학용동	산58-1	철	1,091	1,091	-	국(국토교통부)	
115	학용동	산59-2	철	198	198	-	국(국토교통부)	
116	학용동	산60-2	철	496	496	-	국(국토교통부)	
117	학용동	산63-2	철	1,686	1,686	-	국(국토교통부)	
118	학용동	산65-1	철	496	496	-	국(국토교통부)	
119	학용동	산67-2	철	3,967	3,906	-	국(국토교통부)	
120	학용동	산68-2	철	1,388	1,388	-	국(국토교통부)	
121	학용동	산68-3	철	298	298	-	국(국토교통부)	
122	학용동	산73-2	철	3,372	3,249	-	국(국토교통부)	
123	학용동	산80-1	철	26	26	-	국(국토교통부)	
124	학용동	산80-3	철	2,380	2,380	-	국(국토교통부)	
125	학용동	산80-4	철	30	30	-	국(국토교통부)	
126	학용동	산80-5	철	13	13	-	국(국토교통부)	
127	학용동	산80-9	천	298	52	-	국(국토교통부)	
128	학용동	산82-2	철	992	992	-	국(국토교통부)	
129	학용동	산82-3	철	40	40	-	국(국토교통부)	
130	학용동	산82-4	철	36	36	-	국(국토교통부)	
131	학용동	산83-2	철	36	36	-	국(국토교통부)	
132	학용동	산84-2	철	496	496	-	국(국토교통부)	
133	학용동	산88-2	철	1,488	1,477	-	국(국토교통부)	
134	학용동	산89-2	철	198	191	-	국(국토교통부)	
135	학용동	산89-3	철	33	33	-	국(국토교통부)	
136	학용동	산94-2	철	1,983	1,965	-	국(국토교통부)	
137	학용동	산95-1	철	298	298	-	국(국토교통부)	
138	학용동	산99-2	철	99	99	-	국(국토교통부)	
139	학용동	산99-3	철	496	455	-	국(국토교통부)	
140	학용동	산99-5	철	1,048	569	-	국(국토교통부)	
141	학용동	산99-6	철	99	99	-	국(국토교통부)	
142	학용동	산99-18	천	198	127	-	국(국토교통부)	
143	학용동	산100-2	철	595	595	-	국(국토교통부)	
144	학용동	산102-2	철	3,967	3,967	-	국(국토교통부)	
145	학용동	산102-5	도	97	97	-	국(국토교통부)	
146	학용동	산102-6	천	2,182	486	-	국(국토교통부)	
147	학용동	산102-10	도	300	186	-	국(국토교통부)	
	계			188,144 188,144	95,772 95,860			당초 변경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17. 12.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해산동, 화장동, 소라면 덕양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나. 명 칭 : 녹지공원(덕양양지바름 방풍림 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66,61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초)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허수영/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변경)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김교현/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여천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이규정/여수시 여수산단3로 2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 (당초)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재율/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변경)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상우/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창범/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 KPX라이프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양준영, 최수동/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7. 7.27.
  - 나. 준공예정년월일 : (당초) 2017.12.31., (변경) 2018. 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8. 관계도서(변경) : 게재 생략(여수시 도시계획과)

9. 인가조건(변경) : 게재 생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소라면 덕양리	1478	철	12,446	635.0		국토교통부	
2	소라면 덕양리	1427	천	103,015	1,191.0		국토교통부	
3	소라면 덕양리	1412-24	철	28,696	6,413.0		국토교통부	
4	소라면 덕양리	1412-22	철	960	960		국토교통부	
5	해산동	296-7	철	7	7		국토교통부	
6	해산동	296-10	철	50	50		국토교통부	
7	해산동	296-9	철	103	103		국토교통부	
8	소라면 덕양리	1412-23	철	355	355		국토교통부	
9	해산동	296-2	철	1,351	1,351		국토교통부	
10	해산동	587-10	천	63	63		국토교통부	
11	해산동	296-4	철	1,241.0	1,110		국토교통부	
12	해산동	603	도	192.0	192		국토교통부	
13	해산동	587-20	천	155.0	155.0		국토교통부	
14	해산동	산83-6	철	247.0	247.0		국토교통부	
15	해산동	산83-1	철	6,199.0	6,199.0		국토교통부	
16	해산동	294-5	철	674.0	627.0		국토교통부	
17	해산동	294-2	철	1,098.0	1,098.0		국토교통부	
18	해산동	294-14	철	13.0	13.0		국토교통부	
19	해산동	산82-6	철	51.0	51.0		국토교통부	
20	해산동	294-3	철	122.0	122.0		국토교통부	
21	해산동	587-19	천	1,573.0	604.0		국토교통부	
22	해산동	292-2	철	1,580.0	1,252.0		국토교통부	
23	해산동	583-2	도	169.0	116.0		국토교통부	
24	해산동	산82-3	철	3,618.0	3,618.0		국토교통부	
25	해산동	293-1	철	132.0	132.0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6	해산동	587-12	천	599.0	599.0		국토교통부	
27	해산동	290	철	1,649.0	1,179.0		국토교통부	
28	해산동	587-4	천	301.0	301.0		국토교통부	
29	해산동	148-2	철	2,721.0	2,721.0		국토교통부	
30	해산동	586-1	도	33.0	33.0		국토교통부	
31	해산동	587-5	천	99.0	99.0		국토교통부	
32	해산동	156-3	철	1,637.0	1,637.0		국토교통부	
33	해산동	269-2	철	4,770.0	4,770.0		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해산동	269-2	철	4,777.0	4,777.0		국토교통부	
34	해산동	589-6	도	116.0	116.0		국토교통부	
35	해산동	675-3	도	45.0	45.0		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화장동	675-3	도	45.0	45.0		국토교통부	
36	화장동	산2-1	철	3,173.0	3,173.0		국토교통부	
37	화장동	675-5	철	258.0	30.0		국토교통부	
38	화장동	225-4	철	49.0	21.0		국토교통부	
39	화장동	225-2	철	4,814.0	4,814.0		국토교통부	
40	화장동	675-1	도	74.0	74.0		국토교통부	
41	화장동	675-6	도	1,388.0	92.0		국토교통부	
42	화장동	225-5	철	369.0	369.0		국토교통부	
43	화장동	675-7	도	84.0	84.0		국토교통부	
44	화장동	225-6	철	140.0	140.0		국토교통부	
45	화장동	675-8	도	333.0	333.0		국토교통부	
46	화장동	190-3	철	36.0	36.0		국토교통부	
47	화장동	190-2	철	56.0	56.0		국토교통부	
48	화장동	196-3	철	155.0	155.0		국토교통부	
49	화장동	675-4	도	33.0	33.0		국토교통부	
50	화장동	191-1	철	11.0	11.0		국토교통부	
51	화장동	195-2	철	27.0	27.0		국토교통부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 명	
52	화장동	195-5	철	9.0	9.0		국토교통부	
53	화장동	191-4	철	179.0	179.0		국토교통부	
54	화장동	191-5	철	2,002.0	2,002.0		국토교통부	
55	화장동	산12-1	임	1,488.0	1,488.0	소라면덕리687	이영래 외 5인	당초 변경
	화장동	산12-1	임	1,488.0	1,488.0	소라면덕리687	이영래 외 4인	
56	화장동	677-2	도	915.0	88.0		국토교통부	
57	화장동	676-2	구	2,002.0	311.0		국토교통부	
58	화장동	180-2	철	2,483.0	2,483.0		국토교통부	
59	화장동	672-4	도	598.0	72.0		국토교통부	
60	화장동	산48-2	철	972.0	972.0		국토교통부	
61	화장동	168-2	철	483.0	483.0		국토교통부	
62	화장동	산48-4	철	1,424.0	1,424.0		국토교통부	
63	화장동	산12-2	철	5,355.0	5,355.0		국토교통부	
64	화장동	145-2	철	3,592.0	3,592.0		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화장동	145-2	철	3,592.0	3,590.0		국토교통부	
65	화장동	산51-3	철	1,041.0	540.0		국토교통부	
계				184,455.0	66,615.0			

# 공 고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2.

## 여 수 시 장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 취지

-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안 제3조)
-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규정(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상호, 위치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안 제5조)
-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소모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6조)
-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임무 규정(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18. 2. 13. ~ 2018. 3. 5.(21일간)

4. 제정조례안 : 별첨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거나 메일([phsang@korea.kr](mailto:phsang@korea.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703 전남 여수시 여문2로 124(여수시청 문수청사)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
- 전 화 : 061)659-3602, 팩스 : 061)659-5816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상호, 위치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의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사평가단 및 제9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합회 구성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의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친절도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착한가격업소의 대표자 및 종업원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 여 수 시 장

### 1. 폐업대상 업체

상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업종	업종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성국건설(주)	울촌면 종개길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광양2002-10-07	2018. 2.12.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 2018. 2.13. ~ 2.28.(15일)

3. 공고 장소 :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 고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18. 1. 1.)에 따른 회계부서와 징수부서 간 기능 조정 반영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부서 간 기능 조정

-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 : 징수과장  
(개정) 징수종합계획 : 징수과장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회계과장)

##### 나. 채권의 독촉 시기 관련 규정 정비

- 과도한 채권독촉 절차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현행) 채권관리관이 분기별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소재 파악 독촉장 발부  
(개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다. 규칙 일부 미비점 보완

- 지방세 법규 적용 조항 정비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8. 2. 13. ~ 3. 5.(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minsuk483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전화 : 061)659-3164, FAX : 061)659-5808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다목의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외수입 주관과장, 관서의 장”을 “세입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한다.

제7조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투자사업의”를 “재정 투자사업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22조제1항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과태료·과징금”을 “과징금”으로 하고 “부과·징수”를 “징수”로 “개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기획예산과장” 을 “기획예산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47조제2항 “세정과장, 징수과장은” 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하고 “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과장”을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발급” 을 “발”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제3호 “채권지” 를 “채권자”로 한다.

제50조의4 “통합지출관의 의무”를 “통합지출관의 임무”로 한다.

제51조제1항 “발행할”을 “발하려 할”로 한다.

제55조제4항 “과년도”를 “지난 회계연도”로 한다.

제63조제1항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85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이” 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2조 “공급”을 “공금”으로 한다.

제98조 “제96조”를 “제95조”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6호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 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한다.

제120조제2항 “도지사에게”를 “시장에게”로 한다.

제121조제3항 “(행정자치부 예규)” 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

제121조의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 “회계과장에게”를 “행정안전국장에게” 로 하고 “회계과장은”을 “행정안전국장은”로 한다.

제141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를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3조 “발행, 변경”을 “발생, 변경”으로 한다.

제158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0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2018. . . 규칙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p> <p>①&lt;생략&gt;</p> <p>1. 본 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회계책임관 - <u>안전행정국장</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다.&lt;생략&gt;</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재무관 - <u>안전행정국장</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가. &lt;생략&gt;</p> <p>2. 지방의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lt;생략&gt;</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재무관 - 사무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자.&lt;생략&gt;</p> <p>3. 제1관서(읍·면·동 제외)</p> <p style="padding-left: 20px;">가. &lt;생략&gt;</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분임징수관 - 세외수입 주관과장, 관서의 장</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차. &lt;생략&gt;</p> <p>4. ~ 6. &lt;생략&gt;</p> <p>② ~ ③&lt;생략&gt;</p> <p>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p> <p>①&lt;현행과 같음&gt;</p> <p>1. 본 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u>행정안전국장</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다.&lt;현행과 같음&gt;</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 <u>행정안전국장</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가. &lt;현행과 같음&gt;</p> <p>2. 지방의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재무관 - 사무국장</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자.&lt;현행과 같음&gt;</p> <p>3. 제1관서(읍·면·동 제외)</p> <p style="padding-left: 20px;">가.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차. &lt;현행과 같음&gt;</p> <p>4. ~ 6.&lt;현행과 같음&gt;</p> <p>② ~ ③&lt;현행과 같음&gt;</p> <p>④</p> <p>-----</p> <p>-----</p> <p>-----</p> <p>-----</p> <p>-----</p>



여 해당 실·과 서무업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 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안전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 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8.<생략>

② ~ ③<생략>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여수시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

-----  
-- 담당관·과  
-----  
-----  
-----.

③<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  
----- 행정안전국장 -----  
-----  
-----  
-----  
-----  
-----  
-----.

1. ~ 8.<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  
----- 「지방세기본법」 -----  
-----  
-----.

② ----- 과징금 -----  
----- 징수 -----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 ②<생략>

③<생략>

1. ~ 2.<생략>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 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 ③<생략>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행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생략>

② ~ ④<생략>

-----  
-----  
-----.

② ~ ③<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 채권자  
-----  
-----  
-----  
-----

제50조의4(----- 임무)

① ~ ③<현행과 같음>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발하려 할

-----  
-----  
-----  
-----  
-----  
-----  
-----.

1. ~ 9.<현행과 같음>

② ~ ④<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  
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생략>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에는 지출원인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  
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  
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  
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  
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  
지서(별지 제56호 서식)로서 시행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  
출납원이 지급한 경우에는 공금  
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  
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  
-----  
-----  
-----  
-----지난-----회계연도  
-----  
-----  
-----  
-----  
-----  
-----.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  
-----  
-----  
-----  
-----  
-----  
-----제54조  
-----  
-----  
-----.

②<현행과 같음>

제68조(수입대체경비 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생략>

제80조(준용규정) 제77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4)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급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제68조(수입대체경비 출납원)

①

-----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

②<현행과 같음>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  
-----  
-----  
----- .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②<현행과 같음>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 공금  
-----  
----- .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  
리할 때에는 제96조부터 제97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  
-----  
제 9 5 조  
-----  
-----.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  
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지급  
을 거부하여야 한다.

1. ~ 5.<생략>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  
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②<생략>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생략>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징수업무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  
-----  
-----  
-----.

1. ~ 5.<현행과 같음>

6

-----  
-----  
-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  
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현행과 같음>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시 장  
-----.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②<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 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의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2조(계약실적 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 실적상황(별지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후 다음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행정안전부 예  
규 )-----  
-----  
-----  
-----  
-----  
-----  
-----  
-----

제121조의 2 <삭제>

제122조(계약실적 보고)

①

-----  
-----

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41조(부채관리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생략>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국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41조(부채관리의 장부)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  
-----  
-----.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현행과 같음>

② -----  
-----  
----- 행정 안전 부 장 관  
-----  
-----  
-----  
-----  
-----.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1. ~ 2.<생략>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생략>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행,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1. ~ 2.<현행과 같음>

3  
-----  
-----  
----, 「지방세징수법」--  
-----  
-----.

4.<현행과 같음>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발생, 변경  
-----



현행		개정		
<별표 4> <b>지방자치단체권이 향상되는 이자 지급 기준</b>		<별표 4> <b>지방자치단체권이 향상되는 이자 지급 기준</b>		
1. 지급기준		1. 지급기준		
구분	예탁	대상종류	이자율	비고
정기예금 예탁	만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li> <li>○ 공공시설 손실부담금</li> <li>○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li> </ul>	당해지방자치단체취 급점(금고)의 정기 예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예금 예탁	만6개월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 월 미만인 경우</li> <li>○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li> </ul>	별단예금으로 예탁 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 금
공공예금 예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 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 로 보관하는 경비</li> </ul>	이자 미지급	
2. 정기예금의 만기일		2. 정기예금의 만기일		
<p>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 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 일 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p>		<p>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 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 일 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p>		

# 공 고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진남수영장」 및 「여수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조례에 체육시설 명칭과 사용료 명기
-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

#### 2.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제2조)
  - 신설된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 명기하여 체육시설로 관리
- 사용료 등(제6조)
  - 체육시설 중 신규시설(장애인국민체육센터 내 목욕탕)의 사용료를 [별표2] 일반사용료와 [별표4] 행사사용료에 명기

## ○ 조문 정비(제5조, 제12조)

- 제5조 체육시설 이용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허가 규정 삭제  
⇒ 단순한 대관 허가 사항임
- 제12조 사회체육지도자 명칭 변경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체육지도자

##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예고기간 : 2018. 2. 13. ~ 2018. 3. 5. (20일간)

##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이메일(lsw4427@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9715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진남스포츠센터 2층(오림동)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체육지원과장)
- 전 화 : 061)659-3255, 팩스 : 061)659-580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중 “시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허가를”을 “시장에게 허가를”로 한다

제12조 중 “사회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별표 1] 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별표 2] 일반사용료(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행사사용료(제6조제2항제1호 관련)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4조(생략)</p> <p>제5조(이용허가 등)</p> <p>① ~ ②(생략)</p> <p>③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시장에게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1. ~ 3.(생략)</p> <p>④ ~ ⑤(생략)</p> <p>제6조 ~ 제11조(생략)</p> <p>제12조(<u>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u>)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안내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u>사회체육지도자</u>를 배치할 수 있다.</p> <p>제13조 ~ 제15조(생략)</p>	<p>제1조 ~ 제4조(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용허가 등)</p> <p>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 ----- ----- <u>시장에게 허가를</u> ----- -----</p> <p>1. ~ 3.(현행과 같음)</p> <p>④ ~ ⑤(현행과 같음)</p> <p>제6조 ~ 제11조(현행과 같음)</p> <p>제12조(<u>체육지도자</u>의 배치) ----- ----- ----- ----- <u>체육지도자</u> ----- -----</p> <p>제13조 ~ 제15조(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 시설 명	소재지
진남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남경기장</li> <li>진남체육관</li> <li>야구장</li> <li>실내야구연습장</li> <li>인라인롤러경기장</li> <li>씨름장</li> <li>유도장</li> <li>테니스장</li> <li>실내테니스장</li> <li>국궁장</li> <li>보조운동장</li> <li>족구장</li> <li>게이트볼장</li> </ul>	오림동 123-1 일원
망 마 경 기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경기장</li> <li>준비운동장</li> <li>국궁장</li> <li>게이트볼장</li> <li>국민체육센터</li> <li>- 실내수영장</li> <li>- 다목적체육관</li> </ul>	시전동 109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ul>	<신 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ul>	<신 설>
홍 국 체 육 관	홍국체육관	학동 79
돌 산 체 육 관	돌산체육관	돌산읍 우두리 1117-3
시립테니스장	시립테니스장	학동 100
이 순 신 공 원 테 니 스 장	이순신공원테니스장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대
진 모 축 구 장	진모축구장	돌산읍 우두리 1181

명 칭	세부 시설 명	소재지
진남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남경기장</li> <li>진남체육관</li> <li>야구장</li> <li>실내야구연습장</li> <li>인라인롤러경기장</li> <li>씨름장</li> <li>유도장</li> <li>테니스장</li> <li>실내테니스장</li> <li>국궁장</li> <li>보조운동장</li> <li>족구장</li> <li>게이트볼장</li> </ul>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망 마 경 기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경기장</li> <li>준비운동장</li> <li>국궁장</li> <li>게이트볼장</li> <li>국민체육센터</li> <li>- 실내수영장</li> <li>- 다목적체육관</li> </ul>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진 남 수 영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수영장</li> <li>다목적실</li> <li>복합구장</li> </ul>	오림동 661
여수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목적체육관</li> <li>체력측정실</li> <li>체력단련실</li> <li>장애인목욕탕</li> </ul>	오림동 102
홍 국 체 육 관	홍국체육관	선소로 93(학동)
돌 산 체 육 관	돌산체육관	돌산읍 강남로 18
시립테니스장	시립테니스장	시청로 1(학동)
이 순 신 공 원 테 니 스 장	이순신공원테니스장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대
진 모 축 구 장	진모축구장	돌산읍 강남해안로 196

## 현 행

[별표 2]

### 일반사용료(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원)

시설별		개 인			단 체			비고	
		구분	어른	청소년, 군 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어른	청소년, 군 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주경기장	천연	50,000	40,000	면제			면제	구장당	
	보조	40,000	35,000	"			"	"	
보조구장	천연	30,000	25,000	"			"	"	
	보조	25,000	20,000	"			"	"	
체육관		1,500	1,000	"	1,000	700	"	다목적체육관포함 1인당	
야구경기장		30,000	20,000	"				구장당	
실내야구연습장		20,000	20,000	"				실내사용기준	
인라인롤러경기장		1,500	1,000	"	1,000	700	"	1인당	
테니스장(1면당)	실외천연코트	10,000	6,000	"				1면당	
	실외하드코트	10,000	6,000	"				"	
	실내하드코트	15,000	10,000	7,500				"	
족구장		10,000	7,000	면제				"	
게이트볼장		10,000	7,000	"				"	
유도장		10,000	7,000	"				"	
씨름장		10,000	7,000	"				"	
국궁장		1,500	1,000	"	1,000	700	"	1인당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수영장	회원권(월)	60,000	45,000	30,000				강습료 : 10,000	
	1회사용	4,000	2,500	1,500	3,000	1,500	800		

## 개 정 안

[별표 2]

### 일반사용료(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원)

시설별		개 인			단 체			비고	
		구분	어른	청소년, 군 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어른	청소년, 군 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주경기장	천연	50,000	40,000	면제			면제	구장당	
	보조	40,000	35,000	"			"	"	
보조구장	천연	30,000	25,000	"			"	"	
	보조	25,000	20,000	"			"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체육관		1,500	1,000	"	1,000	700	"	1인당 (다목적체육관 포함)	
야구경기장		30,000	20,000	"				구장당	
실내야구연습장		20,000	20,000	"				실내사용기준	
인라인롤러경기장		1,500	1,000	"	1,000	700	"	1인당	
테니스장(1면당)	실외천연코트	10,000	6,000	"				1면당	
	실외하드코트	10,000	6,000	"				"	
	실내하드코트	15,000	10,000	7,500				"	
족구장		10,000	7,000	면제				"	
게이트볼장		10,000	7,000	"				"	
유도장		10,000	7,000	"				"	
씨름장		10,000	7,000	"				"	
국궁장		1,500	1,000	"	1,000	700	"	1인당	
장애인체육센터	체력측정실			면제				장애인에 한함	
	체력단련실			면제				"	
	장애인목욕탕			2,000				"	
수영장	회원권(월)	60,000	45,000	30,000				강습료 : 10,000	
	1회사용	4,000	2,500	1,500	3,000	1,500	800		

현행	개정안
<p>비고</p> <p>1. ~ 3. (생략)</p> <p>4.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 원권 요금의 15%를 감경한다.</p> <p>&lt;신 설&gt;</p> <p>5. (생략)</p> <p>&lt;신 설&gt;</p> <p>6. 구분</p> <p>가.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13세 미 만, “경로우대자”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단,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은 “청소년”으로 본다.</p> <p>나. ~ 다. (생략)</p>	<p>비고</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수영장</u></p> <p><u>가.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요금의 15%를 감경한다.</u></p> <p><u>나. 수영장 내 헬스장 사용료 및 에어로빅·요가 강습료는 각 월 35,000원으로 하며, 수영을 포함하여 2가지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료 또는 강습료의 15%를 감경한 80,000원을 징수한다.</u></p> <p>5. (현행과 같음)</p> <p>6. <u>장애인국민체육센터</u></p> <p><u>가. 여수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단, 다목 적체육관은 일반인 이용 가능)</u></p> <p><u>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자, 영유아는 장애인목욕탕 이용시 사용료의 50%를 감면 한다.</u></p> <p><u>다. 장애인목욕탕 중 가족탕은 1~3급 중증장애인과 4~5급 하지절단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동반가족 1인 입장 및 사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단, 장애인이 감면대상자일 경우 가족도 감면대상자에 포함한다.)</u></p> <p>7. 구분</p> <p>가.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13세 미 만, “영유아”란 <u>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u>, “경로우대자” 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단, 초등학생은 “어린 이”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본다.</p> <p>나. ~ 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행사사용료(제6조제2항제1호 관련)

행사사용료(제6조제2항제1호 관련)

(단위:원)

(단위:원)

구분 시설별	체 육 행 사		일 반 행 사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50,000	75,000	100,000	150,000		
	축구장(필드)	천연	100,000	150,000	200,000	300,000	구장당
		인조	80,000	120,000	160,000	240,000	"
보조구장	천연	60,000	90,000	120,000	180,000	"	
	인조	50,000	75,000	100,000	150,000	"	
실 내 체 육 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다목적체육관 포함		
야 구 경 기 장	60,000	90,000	-	-	구장당		
실내야구연습장	40,000	60,000	-	-	"		
인라인롤러경기장	60,000	90,000	-	-	"		
테니스장	실외천연코트	20,000	30,000	-	-	1면당	
	실외하드코트	20,000	30,000	-	-	"	
	실내하드코트	30,000	40,000	-	-	"	
족 구 장	20,000	30,000	-	-	"		
게 이 트 불 장	20,000	30,000	-	-	"		
유 도 장	40,000	60,000	-	-	구장당		
씨 림 장	40,000	60,000	-	-	"		
국 궁 장	40,000	60,000	-	-	"		

비고(생략)

구분 시설별	체 육 행 사		일 반 행 사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50,000	75,000	100,000	150,000		
	축구장(필드)	천연	100,000	150,000	200,000	300,000	구장당
		인조	80,000	120,000	160,000	240,000	"
보조구장	천연	60,000	90,000	120,000	180,000	"	
	인조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복합구장 포함)	
실 내 체 육 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다목적체육관 포함		
야 구 경 기 장	60,000	90,000	-	-	구장당		
실내야구연습장	40,000	60,000	-	-	"		
인라인롤러경기장	60,000	90,000	-	-	"		
테니스장	실외천연코트	20,000	30,000	-	-	1면당	
	실외하드코트	20,000	30,000	-	-	"	
	실내하드코트	30,000	40,000	-	-	"	
족 구 장	20,000	30,000	-	-	"		
게 이 트 불 장	20,000	30,000	-	-	"		
유 도 장	40,000	60,000	-	-	구장당		
씨 림 장	40,000	60,000	-	-	"		
국 궁 장	40,000	60,000	-	-	"		

비고(현행과 같음)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고 범국민적 관심제고와 봄 조성 등 누구나 해양레저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도시 육성 및 여수의 대표적 관광 브랜드로 육성

#### 2. 주요내용

##### □ 목 적(안 제1조)

-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여수 이미지 제고 기여

##### □ 정의(안 제2조)

-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카약, 딩기요트, 스노클링 등 스포츠 활동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과 그 주변지역

##### □ 시설(안 제3조)

-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장 구성 시설물 규정
  - 이동식샤워장, 물품보관함, 해양레저스포츠체험 장비(카약, 딩기요트 등)

##### □ 체험장 설치(안 제4조)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소 설치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규정

**이용시간(안 제5조)**

- 체험장 이용시간 규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이용시간 규정

**이용료 징수(안 제6조)**

- 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용료 면제(안 제7조)**

-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이용에 따른 이용료 면제 항목

**이용료 반환(안 제8조)**

- 이용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체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때 이용료 환불 조치

**입장제한(안 제9조)**

- 체험장 운영에 시설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입장 제한 조치

**이용취소 또는 중지(안 제10조)**

- 제7조 각호 및 체험장비를 목적 외 사용 등 체험장 이용취소 또는 중지

**해양레저스포츠시설 임시폐쇄(안 제11조)**

- 시설의 개보수, 재난의 위험 등 그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폐쇄

**시설의 관리(안 제12조)**

- 시설 전반에 관한 활용실태 및 전문 관리인 배치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안 제13조)**

- 체험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이용자의 의무(안 제14조)**

- 이용자가 체험장에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하려는 경우 안전교육 등 의무사항 제시

**3. 입법예고기간 : 2018. 2. 13. ~ 3. 5.(20일간)**

#### 4. 의 견 제 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 (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 (우 59715)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2F) (체육지원과)
- 전화 : (061)659-3253, 팩스 : (061)659-5809, 전자우편 : wyjj@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체육지원과 전화:(061)659-32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및 운영 조례(안)

##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카약, 덩기요트, 스노클링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

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중레저활동

2.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이란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설) ①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된다.

1. 샤워장

2. 물품 보관함

3. 해양레저스포츠체험 장비(카약, 덩기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 드래곤보트 크루저, 고무보트, 스노클링, 스쿠버 등)

4. 기타 부대시설

**제4조(체험장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체험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웅천친수공원
2. 소호요트마리나
3. 여수세계박람회장
4. 만성리해수욕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체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
2.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비(이하 “체험장비”라 한다) 보관 및 대여소
3. 물품 보관소
4. 샤워장
5. 그 밖에 체험 및 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이용시간)** 체험장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체험장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 또는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1일 이전에 이용

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중 또는 그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9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타인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 사람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0조(이용취소 또는 중지)**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 이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체험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이용 규칙 또는 제14조의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9조의 입장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시장은 일반인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해양레저스포츠시설 임시폐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해양레저스포츠시설의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폐쇄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스포츠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해양레저스포츠시설이 안전에 취약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험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시설의 활용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체험장 및 그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험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정기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및 사고 시의 조치요령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체험장에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하려는 경우 안전요원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성 인	일 반	5,000	체험 및 시설이용
	여수시민	2,000	
청소년	일 반	3,000	
	여수시민	1,000	

[비 고]

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7세 미만인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관문동 127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sup>2</sup>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132.9m	2.1m~6m	558m <sup>2</sup>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여수시 관문동	127번지	64.7m	2.1m	142m <sup>2</sup>	“	
여수시 관문동	127-1번지	68.2m	6m	416m <sup>2</sup>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13.

여 수 시 장